

I·SEOUL·U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606-11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019 - 2020

서울, 인권의  
순간들 8  
STORY BOOK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019-2020)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정책팀장 유희숙, 담당 주무관 김지영

발행 2021년 8월 20일

기획/원고/디자인 포니테일 크리에이티브(070-8748-0313)

김선미, 박민혜, 장진석, 양경필

발간등록 번호 51-6110000-001606-11

ISBN 979-11-6161-067-2



### STORY BOOK 서울, 인권의 순간들 8

2019~2020년 동안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인권 관련 순간들. 경비 및 택배 노동자의 권리, 디지털 성 착취, 발달장애인의 삶, 성 소수자 차별 등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주제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스페셜 섹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재조명했습니다. 인권활동가와의 좌담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봅니다.

Comment

## 4 Citizen's Voice

Moment 1

6 경비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는 없다.

Moment 2

10 플랫폼이 만든 인간의 노동.

Moment 3

14 끝나지 않은 지옥,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Moment 4

18 1984년생 용준씨의 다시 서기.

Moment 5

22 다름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Moment 6

26 유니버설디자인, 모두가 존중받는 삶.

Moment 7

30 믿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 종교의 자유.

Moment 8

34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 Citizen's Voice

## Moment 1 경비 노동자

“경비원 분들이 그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 경비원 분들 아닐까 싶네요. 그들의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모두 반성했으면 합니다.”

“매일 뉴스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들, 경비업체의 각성이 없다면 똑같은 소리가 되풀이될 뿐이죠.”



사진: 뉴스1

“경비원이란 직업은 삶의 질을 위하여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직업군과 같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상 근로자의 직위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Moment 2 택배 노동자



사진: 뉴스1

“사람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택배 업계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인 듯합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택배 기사들은 모친상, 부친상을 당해도 당일 업무를 마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동료 기사가 실제로 겪은 일을 옆에서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언제부턴가 <둔키호테>에 나오는 문구를 아침마다 마음에 새기며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태어난 죄이다.’”

## Moment 3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보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유포하지 마세요. 물래 찍지 마세요. 피해물을 본다면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생존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저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일상을 보냈을 뿐인데 왜 제가 성범죄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 친구는 잘 살 텐데 왜 나는 몇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피해자분들 응원합니다. 우리들 잘못이 아니에요.”

“함부로 댓글도 달 수가 없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한들, 피해자의 마음이 그 전처럼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 Moment 4 장애인 탈시설화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시설화는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인력이 없다면 장애인은 그저 다른 타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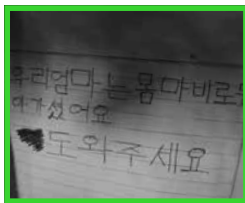


사진: 뉴스1

“저희 아파트 근처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겨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지 않았는데 우리집 가까이에 생긴다고 하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장애인 혐오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제가 가는 정신과 병원만 해도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사실 저도 경증이지만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이 평소에는 뭘 할까.’ 여전히 시설이나 집에 고립된 발달장애인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 Moment 5 성 소수자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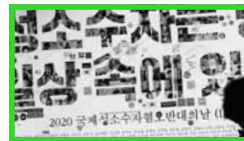


사진: 연합뉴스

“성 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차별과 편견은 버립니다.”

“다수라는 이유로 ‘우리는 되고 너는 안된다’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성 소수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나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성 정체성은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중장년층에게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Moment 6 유니버설디자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아직 해당하지 않는, 절실히 필요한 권리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로의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며 공감하는,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다리 골절을 당해서 잠시 휠체어를 탔었는데 100m 거리에 있는 슈퍼에 가는 것도 보행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시적이었지만 평생 이런 환경을 견뎌야 한다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정말,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Moment 7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시나 도에서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왜 종교를 강요하나요. 그럴 거라면 보조금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세요.”

“종교에 소속된 사회복지 현장 및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반드시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쉬고 싶어서 일요일 활동을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종교와 사회복지자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Moment 8 팬데믹과 인권

“코로나 확진자를 공개하는 방식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확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들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마녀사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공공의 질서를 위해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입니다.”

“일상에서 꿈을 찾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일상을 찾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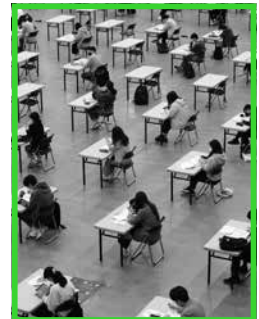


사진: 연합뉴스

# 경비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는 없다。

1

‘갑질’이 인터넷상에서 신조어로 등장한 것은 2013년 무렵. 이는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특정한 행동을 폄하하는 말이다. 사실, 갑과 을은 지위의 구분이 아니다. 그저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와 책임을 주고받는 주체들을 일컫는 말일 뿐.

2020년 5월 10일, 경비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입주민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욕감과 생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성실한 한 개인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저 백백한 아파트 숲 사이, 그 어디에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는 없다.

Keywords: #경비 노동자 #갑질 #아파트 #감시단속적 노동자

아파트는 서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7.2%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에게 안락한 터전이 되어주는 아파트 안에는 그곳을 치열한 생업의 현장으로 삼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히 아파트 주위를 순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아파트 입구 차량 차단기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틈틈이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미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정리한다. 주차장에서 외부 차량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정기적인 순찰과 CCTV 체크, 걸려오는 여러 문의 전화에 관한 응대도 당연히 그들의 일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금은 택배 관리와 우편물 하달 업무까지 경비 노동자의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 불합리한 업무 확장, 누락된 권리

문제는 확장된 업무 영역에 비해 경비 노동자의 권리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현행법상 경비 노동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업무(택배 물품 보관이나 주차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를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경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노동자(간헐적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감시단속 노동자란 경비, 수위, 물품 감시 업무를 하는 노동자와, 보일러 기사 등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심신의 피로 등 업무 강도가 적은 근로라고 간주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 규정에서도 예외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호에 따르면 이들에 한해서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 휴게 시간과 관련한 규정에서도 예외로 한다. 이는 싼 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 하에서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 심지어 원칙대로 순찰이나 감시 등의 업무만 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거의 없다.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련 업무를 위해 별도의 고용을 또 하게 되면 경비 노동자 감축이나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업무 확장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비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 구조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 관리 회사나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데 사실상 간접 고용의 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으며 불안한 고용 형태에 놓이게 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주민회의가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들을 고용할 경우, 입주민은 경비 노동자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해고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입주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경비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게 되는 것. 2020년, 서울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였던 고 최희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 노동인권, 연대의 움직임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2020년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크게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추진항목을 정했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 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이러한 외부적인 접근뿐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경비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경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30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국 노동센터들도 ‘경비 노동자 사업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라 불리는 경비 노동자의 인권은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갑질하는 입주민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수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가해와 다를 게 없다. 경비 노동자의 한 달짜리 근로계약을 아파트 주민의 힘으로 개선한 사례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부당함을 견제할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가족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경비 노동자. 아파트가 안락한 집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곳곳에 숨은 이들의 노동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Data

### 경비 노동자 담당 업무의 평균 비중

		구분	방법	청소	조경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
세대 구분	500세대 미만	26.0	19.2	7.1	24.4	12.1	11.2		
	1,000세대 미만	23.0	24.1	6.3	22.2	10.4	14.0		
	1,000세대 미만	28.1	19.7	4.6	23.2	11.2	13.2		
근속	1년 미만	28.5	20.1	6.1	24.5	9.1	11.7		
	3년 미만	26.6	19.7	4.6	22.3	12.5	14.3		
	5년 미만	25.0	22.6	5.4	20.8	14.0	12.2		
	10년 미만	23.4	22.5	6.5	21.7	11.5	14.4		
	10년 이상	21.6	21.5	7.0	29.2	11.9	8.9		
연령	65세 미만	36.5	15.7	3.6	24.6	7.6	11.9		
	70세 미만	24.8	22.1	5.4	22.7	10.9	14.1		
	70세 이상	22.7	22.0	6.5	22.9	13.2	12.7		
입주 기간	10년 미만	24.2	22.9	5.8	20.8	13.4	13.9		
	20년 미만	28.5	19.7	6.5	17.7	13.7	13.9		
	20년 이상	30.2	17.0	3.4	28.7	9.3	11.4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중 팬더믹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확장된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배달, 택배업일 것이다.

비대면의 요구로 급성장한 영역이지만 택배를 배달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누구일까. 이 역시 사람이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해고 노동자 중 다수가 생활을 위해 택배업을 임시 생계 수단으로 선택했고, 자전거나 도보로 동네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종에도 다수의 2030 청년들이 유입됐다. 그렇게 택배 및 배달업이 몸집을 키워가는 사이 하나들 쌓였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 노동. 인간의 플랫폼이 만든

## 2

Keywords: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노동자

택배업과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들은 업무를 위해 쓰는 비용(각종 수수료, 차량 연료비, 보험) 등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고 배달 건수당 정해진 수당을 받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택배회사(원청)-대리점-택배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용형태라 사고가 생길 시 고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에도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하차 분류 작업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불멘소리로 묵과되던 중 택배 노동자들이 업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 노동 강도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업무 중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루에 13~14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못했으며, 식사를 거르면서 밤 10시까지 일해 하루 400~500개 물량을 배달했다는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일까. 2020년 7월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10월 8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11월 12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밤 10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제한했으며, 택배 노동자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식 법제화는 여전히 머나먼 일이다. 그나마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역시 아직은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 기계에 종속되는 플랫폼 노동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는 배달 노동자인 리키의 일거수일투족이 PDA(휴대용정보단말기)에 기록되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배달의 속도와 건수는 노동자를 통제하고, 벌점 등의 서비스 점수를 통해 노동자는 점점 더 기계에 예속된다. 리키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줄여 배달 건수를 맞추려 하지만 기계가 원하는 속도에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 사업자로 계약되어 있기에 배달을 위한 자동차를 사고 유지하는 비용도 모두 리키의 몫.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처리는 커녕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는 영화의 배경인 영국이나 먼 미래의 사이버펍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만 기계가 제시한 기준치에 맞출 수가 있다. 사고 발생시 플랫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법적으로 당신을 고용한 바 없으며, 속도를 높이라고 문서로 지시한 바 없다고. 플랫폼 노동은 개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해 책임과 비용은 전가하면서 수익은 철저히 정해진 비율만큼만 나눈다.

한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라이더가 배달콜을 여러 번 거부할 시 불이익을 겪는다고 말한다. 수락 거부를 자주 하면 평점이 낮아져 계정이 정지되고 계속 배달을 거절하면 배차 제한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받는다는 것이다. 외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알렉산드리아 J.라브넬 지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 골라 하며 돈을 버는 유토피아일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이 용인하는 수락률과 응답시간을 유지해야만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저자는 ‘많은 사람을 사업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던 현재의 플랫폼 기반 경제는 반대로 초기 산업사회처럼 암울한 노동과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산재를 인정해준 몇 건의 판례가 존재하고, 2020년에는 정부가 나서 택배사와 노동자의 임시협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여전히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뉴스가 이어지는 산업 구조에서 노동자는 조합을 이뤄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는 저임금으로 인해 달성되는 저렴한 비용에 의문을 품으며 잘못된 노동 관행들에 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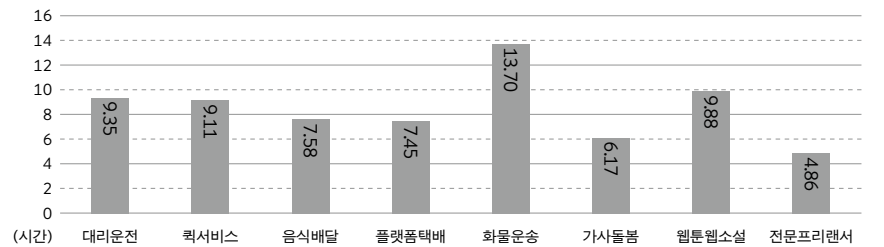
Data

통계로 보는 플랫폼 노동자 근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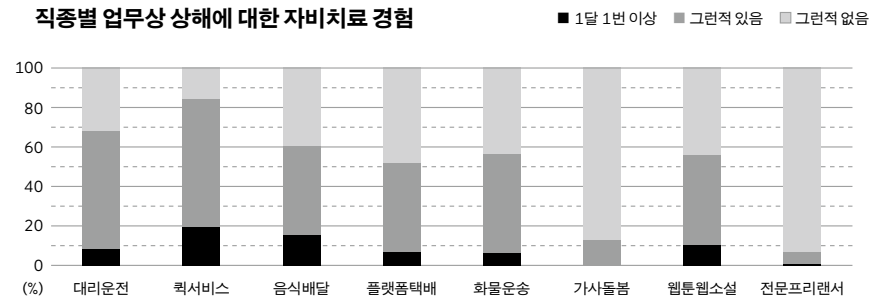
직종별 일주일 평균 일하는 날

	빈도(회)	평균(일)	표준 편차(%)
대리운전	177	5.9	0.97227
퀵서비스	50	5.4	1.16216
음식배달	72	5.1	1.58741
플랫폼택배	60	4.4	1.66926
화물운송	100	6.1	5.03928
가사돌봄	206	4.6	0.99449
웹툰웹소설	59	6.1	1.08554
프리랜서	86	3.7	2.09562
총계	810	5.2	2.29335

직종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직종별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자비치료 경험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끝나지 않은 지옥, 3

처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기사를 꿈꾸는 두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었다. 2019년 7월, 공모전에 낼 탐사 르포 기사를 준비하던 그들은 10분여의 '구글링'만으로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다. 뒤이어 '파생방'을 지나, 고작 다섯 시간 만에 총 8개로 구성된 대화방을 통칭하는 'N번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미 파생방에서 불법 촬영물들이 대량으로 오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N번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추적단 불꽃은 이 N번방 사건의 최초 신고 및 보도자가 되었고, 일부 가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다. 그렇게 조금씩 N번방은 수면 아래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Keywords: #N번방 #성 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policy book p.12

N번방 사건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다. 2020년 12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총 1,154명. 그중 10대 이하가 무려 60.7%에 이른다. 성 착취물 제작, 유통, 구매, 소지에 해당해 적발된 자들도 자그마치 3,575명. 그중 10~20대의 비중은 68%에 달했다.

N번방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범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2020년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이 올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국회 접수 요건인 동의자 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 급하게나마 일명 'N번방 방지법'을 발의, 통과시킨다.

## 디지털 성 착취 문화의 진화

그러나 현실의 반응과는 달리, 텔레그램의 성 착취, 성범죄는 여전했다. N번방 이후에도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합성 사진), 불법 촬영, 온라인 스토킹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앞다투어 생겨났다. N번방을 모방한 디지털 성 착취 방도 이어졌다. 일명 '박사방'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성 착취 영상을 올려 복종하게끔 만드는 수법이 N번방과 같았다. 다른 것은 암호화페로만 결제해야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더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것이다.

여성을 도구화하고 성을 착취하는 비인간적 범죄 행위는 N번방이 처음은 아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수십 년 전부터 맥을 이어온 거대한 디지털 성 착취 문화를 학습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음지의 온갖 곳에서 보다 주도면밀하고 조직적이며 악랄한 방식의 디지털 성 착취가 횡행하고 있다. 리셋(ReSET)에 따르면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는 112개에 달하고, 이 서버를 이용한 가해자들은 30만 명 이상(2020년 3월 18일 오후 기준)'이다. 이 규모는 단순 추산 시의 결과로 주변의 누군가가 가해자 무리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한다.

###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가 낳은 폐해

문제의 핵심은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이다. 디지털 성 착취에 관한 가벼운 인식이 수십 만의 가해자를 만들고, 범죄성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하는 법원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한다. N번방 사건 이후 꾸려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 박사방 관련 가해자들을 수백 명 검거했지만, 주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려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부실한 처벌이 불러오는 건 뻔하게도 또 다른 N번방, 또 다른 성범죄자일 테다.

디지털 성 착취는 고도로 지능화된 사이버 범죄다. 온라인을 기점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성범죄와 이에 분노하는 국민의 민감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과 법안은 평생을 고통에 몸부림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입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강력한 처벌과 제도가 절실하다. 속도를 맞추는 것을 넘어 앞서가야 할 때다.

## Data

###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은 서울 세이프’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도 아동·청소년 전담 기관은 부족한 상황.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익명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심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개설.

- 아동·청소년 익명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 경찰 동행까지 실제적인 지원
-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 피해자와 가해자, 교사를 비롯한 통합 교육
- SNS 내 ‘N번방 사건 방지 프로그램’ - 디지털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 가해자를 추적, 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추진
-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전화 02-2275-2201)
-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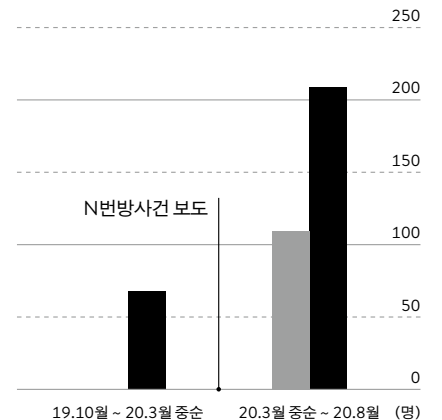
####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피해 지원

1. 불법촬영 - 35%
2. 온라인 그루밍 - 24%
3. 유포, 재유포 - 18%
4. 유포협박 - 8%
5. 기타 - 15%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N번방사건 보도 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4배 증가



# 1984년생 용준 씨의 다시 서기。

## 4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의미한다. 자식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 돌봄이 필요한 노인,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 그 모습도 다양하다. 더 들여다보면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도움도 천차만별. 그 틈 사이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복지 정책은 그늘진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빈곤의 책임이 끝내 개인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양지의 면적을 늘리는 일이다. 1984년생 발달장애인 용준 씨도 그늘진 사각지대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건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어머니 옆에서 무려 반 년을 보내고 나서였다.

Keywords: #취약계층 돌봄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제 #기초생활보장법 #policy book p.16, p.27

2020년 12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1984년생 최용준 씨(이하 용준 씨)는 서울 방배동 이수역 입구에 쪼그려 앉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몸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38살의 외모와는 동떨어진 의사소통법. 공책에 삐뚤삐뚤 써 내려간 두 문장은 투박했지만 절실함이 보였다. 다행히 용준 씨는 한 사회복지사의 눈에 띄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책에 적힌 어머니(김 씨) 이야기 또한 사실.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김 씨는 2020년 5월경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어머니가 팔이 안 움직이면서 쓰러졌을 때요. 내가 말을 계속해 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장애등급 중증의 발달장애를 가진 용준 씨는 막연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지만 치료비를 내라고 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반년 넘게 죽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만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도저히 지낼 수 없어 거리로 나오게 된 용준 씨.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 부양의무제가 지우는 짐, 세상과의 단절

용준 씨에게 가족이 어머니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호적상으로 존재하는, 하지만 20년 넘게 떨어져 지내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아버지와 여자 형제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유명무실한 틀 안에서 그들은 부양의 의무로 엮여 있었다. 용준 씨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 김 씨에게는 성인이 된 딸이 법적 부양자였다.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제<sup>(1)</sup>라는 법 때문에 용준 씨와 어머니는 제대로 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경제적 부양의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의 보조금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4가지 보조금 중 주거급여(28만원)만으로 삶을 근근이 이어나가야 했다.

부양의무제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아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만든 제도다. 부모는 자식을,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틀이 점점 해체되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인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 나아가서는 삶을 마감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된다.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배우자가 부양을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 예컨대 가족 해체 증명서로 가족과 단절된 이유를 설명하고 ‘부양 관계가 아님’이 증명될 때만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sup>(2)</sup>,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sup>(3)</sup>, 그리고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이어진 부양의무제의 폐해는, 21세기에 걸맞은 진짜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리라고 충고한다.

### 홀로서기 시작, 세상 속으로

서울시는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가족의 보편적 형태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로 한 것. 2021년 5월부터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준 씨도 서울시의 품 안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어엿한 시민이 되었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정부로부터 70~80여만 원의 보조금도 수령한다. 장애인 등록을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 발달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정밀검사와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용준 씨 가족이 그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어머니와 달리 용준 씨는 장애인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노숙을 하면서도 양치질을 교박교박 해 충치가 거의 없었다는 용준 씨. 어머니가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 4월 12일 자료 용준 씨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타진해보았으나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가량의 비용을 장애인 보조금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에서 1년간 심리치료와 직업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상에 혼자 남은 1984년생 용준 씨. 구직 등 삶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늘진 사각지대에서 이제 막 발걸음을 뚫는 그의 삶에 조금씩 온기가 스민다.

- (1) 부양의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나 의료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배우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을 제한하는 제도.
- (2)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꺾다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대로 된 취직을 못 하던 두 딸이 있었고, 더군다나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음. 그나마 가족을 부양했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팔을 다쳐 일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30대 두 딸이 부양의무자로 남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음.
- (3)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19년 7월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 이주민 한 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 원인은 아사로 추정. 2009년 한국에 온 한 씨는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었으나 이듬해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서 수급이 중단.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했던 한 씨는 2019년 1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왔는데, ‘남편과의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주민센터의 요구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했고, 반년 뒤 아들과 함께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됨.

## Data

### 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사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작 → 2010년 1월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일명 ‘세모녀법’ → 2015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작 → 201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 7월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 2020년 12월 방배동 모자 사건 → 2021년 5월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아래 부양의무제 폐지 → 2022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 202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 차별의 다름은 5

## 이유가 될 수 없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sup>(1)</sup>이다. 이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가 성 소수자를 위한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의 경험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1년 5월 17일, 또 한 번 찾아온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수많은 성 소수자와 앨라이<sup>(2)</sup>가 거리로 나섰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길고 긴 행렬.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다’

(1) IDAHOBIT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2) 앨라이(Ally)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그 당사자가 아닌 이가 반대하는 것

Keywords: #성 소수자 인권 #다양성 #혐오 반대 #policy book p.36, p.37

2020년 8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어진 대형 광고판이 발견되었다. 이는 2020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에서 게시한 것이었다. 광고판 안에는 성 소수자 인권 지지자들이 보낸 얼굴 사진을 이어 붙여 만든 ‘성 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 사업 중 하나로, 8월 한 달 동안 게시될 예정이었다. 본래 5월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일명 아이다호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였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불허 판정,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정보다 훨씬 늦게 게시되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이 걸리자마자 갈라리 찢긴 것이다.

광고판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성 소수자가 싫어서 그랬다”라며 범행의 이유를 밝혔다. 성 소수자가 공적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죄목은 재물손괴죄였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단순히 광고물 훼손의 차원을 넘어 폭력과 혐오의 발산이었다. 일상 속 성 소수자의 존재를 상기하며 평화로운 공존의 방식을 모색해 보자는 용기 있는 제안은 한순간에 찢기고 거부당했다.

###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존재는 없다.

하지만 연대의 마음까지 찢을 수는 없었다. 훼손된 광고판을 임시로 가리기 위해 설치된 흰 현수막 위에 손글씨로 복구된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등장한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성 소수자는 당신의 혐오를 이길 겁니다”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훼손된 광고판 위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붙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 재설치된 현수막 또한, 훼손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검은 매직으로, 파란색 물감으로, 6차레나 이어진 광고판 훼손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혐오의 표출이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성 소수자와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쉽게 멈추지 않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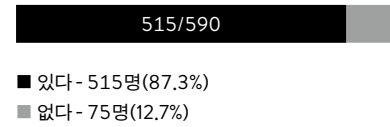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17년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94.6%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87.5%는 오프라인에서도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 소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젠더, 국적, 인종의 차이가 때로는 차별과 혐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더 손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오가 일상화되면 개개인 누구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라는 정서는 반복되고 또 확장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르다는 것은 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서로가 가진 색을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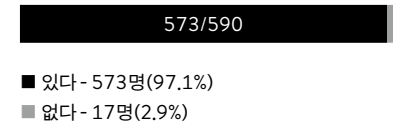
Data

트랜스젠더로서 경험한 차별과 그 이유

12개월 동안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뉴스 등)에서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12개월 동안 인터넷(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지난 12개월 동안의 차별 경험과 그 이유

	전체 (n=588)	트랜스		명(%)	
		여성 (n=188)	트랜스 남성 (n=109)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n=221)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n=70)
차별 경험 있음	501(85.2)	151(80.3)	62(56.9)	207(93.7)	59(84.3)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성별표현 때문에	384(65.3)	120(65.3)	48(44.0)	155(70.1)	47(65.3)
성별 때문에(성차별)	312(53.1)	63(33.5)	32(29.4)	176(48.4)	25(35.7)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외모 때문에	235(40.0)	76(40.4)	17(15.6)	107(57)	20(28.6)
성적 지향 때문에	226(38.4)	47(25)	17(15.6)	126(57)	30(42.9)
나이 때문에	131(22.3)	26(13.8)	15(13.8)	73(33)	15(21.4)
경제적 상황 때문에	121(20.6)	37(19.7)	6(5.5)	56(25.3)	11(15.7)
학력/학벌 때문에	102(17.4)	23(12.2)	8(7.3)	49(22.2)	15(21.4)
질병 유무 때문에	64(10.9)	10(5.3)	6(5.5)	42(19)	6(8.6)
출신지역 때문에	55(9.4)	8(4.3)	8(7.3)	35(15.8)	4(5.7)
가족 형태 때문에	36(6.1)	12(6.4)	6(5.5)	14(6.3)	4(5.7)
장애 때문에	33(5.6)	12(6.4)	2(1.8)	13(5.9)	6(8.6)
혼인 여부 때문에	23(3.9)	4(2.1)	0(0.0)	15(6.8)	4(5.7)
종교 때문에	18(3.1)	7(3.7)	1(0.9)	7(3.2)	3(4.3)
국적/인종 때문에	18(3.1)	4(2.1)	3(2.8)	10(4.5)	1(1.4)
기타 이유 때문에	49(8.3)	11(5.9)	8(7.3)	21(9.5)	9(12.9)
차별 경험 없음	87(14.8)	37(19.7)	25(22.9)	14(6.3)	11(15.7)

## 6

# 유니버설디자인, 모두가 존중받는 삶。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유아차를 미는 엄마,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을 위한 센서 자동문. 이는 모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능력, 문화적 배경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고려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버스나 지하철의 높이가 서로 다른 손잡이, 공중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 등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 기존 환경은 ‘평균’이라는 개념 아래 계획되어 그 기준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은 생활 속 약자들까지 삶의 최대한을 누릴 수 있도록 ‘평등’을 이야기한다.

Keywords: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policy book p.30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척수성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이자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1974년 처음 만들었다. 지금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포괄한 더 넓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고령자, 육아기 아이를 둔 부모, 외국인 같은 생활 속 약자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다양성이 점차 부각되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중요한 화두다. 서울시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0년 12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16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8년에는 ‘기본계획’을, 2020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종합 설계도를 갖췄다. 2021년부터는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약자를 위한 디자인=만인을 위한 디자인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동대문구 전농1동 화목경로당은 서울시의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대표적 모델. 화목경로당은 과거에 하루 평균 30여 명의 80세 전후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협소하고 동선이 복잡해 단편적인 활동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시민체험단이 직접 진단해 도출한 개선사항과 행동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 건물 접근공간에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도록 캐노피와 조명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색상의 주의 사인과 차갑지 않은 재료의 안전손잡이를 적용했다. 입식, 좌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실에 소파와 좌식마루를 함께 설치한 것도 포인트. 그밖에 손 끼임을 방지하는 디자인의 수납장, 돋보기 보관함을 갖춘 다용도 계시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 설치 확장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순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른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주택도 있다.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화곡’은 정부가 제공한 토지에 예비사회적기업인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만든 사회주택이다. 건축 단계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했고, 각 세대 현관까지 가는 ‘접근부’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총 12세대 중 3세대에 고령자, 휠체어 장애인,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해당자를 임대 우선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종로구 충신윗마을 일대에 자동차 미끄럼 방지 노면과 정비된 계단, 승터,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한 것도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중 하나다.

누군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비장애인이 다수이지만, 장애인도 적지 않은 숫자다. 나 또한 불의의 일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결국, 나를 위한 디자인이기도 하다.

## Data

### 유니버설디자인 7가지 원칙



#### 1. Equitable

#####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 2. Flexibility In Use

##### 사용성의 융통성

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 3. Simple And Intuitive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사용 시 피드백이 있는가?



#### 4. Perceptive Information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정보 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 입수가 가능한가?



#### 5. Tolerance For Error

##### 오류에 대한 포용력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



#### 6. Low Physical Effort

##### 적은 물리적 노력

무의미한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



#### 7.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외 사용자와 도우미가 사용이 가능한가?



“제5장 제74조(종교의 자유) 시설장은 직원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종교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후원 강요 금지) 시설장은 직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

규정은 계속 업그레이드되지만, 실제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불거지는 인권 침해는 ‘강요’라는 단어를 교묘히 피해 간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에게 근무 평정을 미끼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거나, 후원금 납부를 입사 초기부터 의무화해 마치 자발적인 행동인 것처럼 포장하는 식이다. 사회복지시설 내 횡행한 암묵적 종교 강요. 믿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제대로 된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요원하다.

종교의 자유。  
권리까지 포함한  
믿지 않을

7

Keywords: #종교의 자유 #인권결정례 #직장 내 괴롭힘 #policy book p.45

2018년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률 제3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국회 입법예고<sup>(1)</sup>에서 이 법안은 이슈였다.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2,500건 이상 달렸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일부 종교계였다.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침해한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끝내 이 법안은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법안을 반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이러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는 직원의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고, 관련 활동을 제한하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들은 각 복지시설이 어떤 종교 이념으로 세워졌고 운영되는지 미리 알고 있고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 그릇된 종교의 자유

그러나 이 주장들에는 오류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종교에 귀의해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사명감의 원천이 종교에서만 온다는 생각은 몹시 위험하다. 또한,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을 선택할 자유 역시 실상 그 범위가 매우 좁다. 한국 사회복지시설은 대다수가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각 종교계가

(1) 국회 입법예고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은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전체 529곳 가운데 기독교가 259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불교 152곳(28.7%), 천주교 97곳(18.3%), 원불교 14곳(2.6%), 기타 7곳(1.4%)으로 조사됐다. 이미 특정 종교계 운영으로 편향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선택 폭이 넓을 수는 없다.

### 긴급제안,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

2018년 법안 발의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자유 침해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그해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특단의 조치로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종교 법인의 이념과 가치, 순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홈페이지에 특별신고센터 운영 내용을 게재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아래 신고된 내용은 복지사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고된 곳은 기독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27명의 직원 중 기독교(개신교)인은 13명, 비기독교인은 14명이었다. 인권 침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시설은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예배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를 기록했다. 매주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법인에서 관리하는 요양원 내 교회의 주말 예배에 참석하고, 이 활동들은 직원들의 직무와 무관한 데도 근무평정<sup>(2)</sup>에 반영되었다. ‘2018년 직원 근무평정’ 기록을 보면, 경건회는 참석 1회당 0.2점, 요양원 내 교회 참석 1회당 1점, 운전 및 특송<sup>(3)</sup> 1회당 3점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점수를 미끼 삼아 종교 활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도 모자라 시설은 가족확대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직원들에게

(2) 근무평정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

(3) 특송 ‘특별 찬송’의 준말. 각종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특별히 순서를 맡은 자(개인 혹은 그룹)가 부르는 찬송.

후원금을 강요했다. 거의 모든 직원이 입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매월 후원금을 납부했다. 그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 위계를 통해 자발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갑질이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신고한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2차 가해였다. 시설의 상임이사는 신고한 이들을 겨냥해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글을 투척했다. ‘서울시의 방침에 부화뇌동하여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직원은 복지관의 가족이라 할 수 없다, 그런 행동은 결국 200여 명의 장애인과 800여 명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다’라는 폭언을 한 것. 그리고 복지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떠나길 종용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였다.

종교의 자유에는 마음껏 종교를 믿을 자유만이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왜곡된 시선을 가진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은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그 안에서 편향되어 버린 자유의 본질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본문에 언급된 사례는 201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사건번호19신청-512, 19신청-57)’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Data

### 사회복지시설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 지난 12개월 동안의 차별 경험과 그 이유

구분		(명)	(%)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예: 종교기관 출석, 예배·참배 등)를 나에게 하도록 했다	전혀없음	917	80.4
	6개월에 1~2회 정도	107	90.4
	월 1회	59	5.2
	주 1회	38	3.3
	매일	19	1.7
전체		1,140	100.0

# 우리에게 남긴 것들。

## 코로나 19가

8

패널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정민석 (사무처장)

진행  
포니테일  
김선미 (대표)  
박민혜 (수석 에디터)



사진: 포니테일

재난은 언제나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대면 수업은 소득 수준과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고, 비정규직 종사자는 고용의 불안감을 떠안은 채 점점 더 삶의 경계로 내몰렸다. 먼 훗날 역사는 2020년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남겨야 할까.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정민석 사무처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인권,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나눴다.

Keywords: #코로나19 시대의 인권 #인권재단 사람 #차별금지법

**포니테일(이하 포):** 간략하게 인권재단 사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민석(이하 정):**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운동과 인권활동가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올해로 17년이 되었네요. 주된 사업은 모금과 배분입니다. 작년부터는 인권활동가 교육이나 휴식, 마음 돌봄 등 지속가능한 인권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포:** 인권활동가 입장에서 바라본 팬더믹 상황 속 인권은 어땠나요?

**박래군(이하 박):**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였죠. 정부에서부터 지자체, 시민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임시조치로 내린 행정 명령들이었어요. 집회 금지에 관한 부분이나 자유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과연 인권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에 관한 위험성도 크게 느끼고 있고요. 어딜 가든 방문기록을 남기거나, QR코드를 찍어야 하잖아요. 개인 정보가 빅데이터화 된 거죠. 1년 사이 이 데이터들을 상업화하거나 통제 기술로 활용할 여지가 방어막 없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유보했던 표현의 자유 등을 언제까지 막아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고요.

**포:** 인권활동가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겠어요.

**정:** 너무 갑작스럽게 겪다 보니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팬더믹 상황에서 많은 후원자가 이탈하고,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적응의 문제도 있었죠. 인권단체들 대부분이 기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 활동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익 사업인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을 못 하면 단체 운영비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단체의 존폐 문제로 연결되고요.

**박:** 방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문제도 기억이 나네요.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관한 것도 있었고, 경북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격리<sup>(1)</sup>도 그렇고.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준 건 긍정적인 대응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랬던 서울시가 작년 연말 신아원 사건<sup>(2)</sup>에 대응하는 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3~4일만에 다시 원래 시설로 돌려보냈잖아요. 상황이 급변하고 갑작스러우니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팬더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인권적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인권을 쉽게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들은 더욱더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 포:** 가령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더 불거질 문제잖아요. 시스템이 취약하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는 기분이기도 해요. 인권단체들의 제안이나 의견이 실제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이 된 사례들이 있나요?
- 박:** 작년 이태원 클럽 감염 사건<sup>(3)</sup> 때 성 소수자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방역 담당자들과 서울시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빨리 진화를 시켰어요. 안 그랬으면 성 소수자 관련 낙인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현장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거죠. 그 제안들을 기관이 얼마나 수용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 포:** 이태원 클럽 사건 때 협치했던 곳들은 어떤 곳들이었나요?
- 정:** 기존에 있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연합해서 긴급 대응을

했는데, ‘코로나19 긴급대응 성 소수자대책본부’를 임시적으로 만들었어요. 일상적 거버넌스가 있고, 필요할 때 긴급하게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공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 감염 때는 단체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방역, 서울시 인권과, 현장단체들이 같이 협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서울시에 익명 검사 도입을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익명 검사가 전염병 확산 방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럽 방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보건소에서 가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일부 보건소에서 그걸 유도한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클럽 간 사람들은 에이즈 검사까지 해야 해’ 이런 낙인을 의도치 않게 줘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현장에 있던 단체에 인권침해로 접수됐고, 이 문제 제기가 서울시 인권과, 방역과를 거쳐서 하루 만에 에이즈 검사를 하지 말라는 개선 결정이 났어요.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빨랐죠. 처음 겪어보는



홍남표 인터뷰

상황이나 긴급대응 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죠. 이태원 클럽 감염 때는 이런 대응의 흐름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홍리스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 센터 집단감염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장단체들이 홍리스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고 인권침해 문제를 인권팀이나 방역과 쪽에 계속 전달했어요.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격리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아요.

홍리스들의 백신 배분에 대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 전 국민이 백신 접종 대상자잖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전 국민’과 인권단체들이 생각하는 ‘전 국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누락, 그리고 누락자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락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집이 없거나, 소수자이거나, 약자란 말이죠. 그것을 공적 시스템이 얼마만큼 커버하고 있는가는 고민해야 하는 문제죠.

- 포:** 이런 상황을 나중에 답습하지 않기 위해, 또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미 있게 다뤄져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정:** 지자체장 권한으로 행정 명령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 박:**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상징적인 기관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 사실 방역 지침이 나오면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거든요. 사실 가이드라인도 인권단체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집회 시위의 권리도, 사실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특히 약자일수록 모여 말할 권리가 더욱 필요한데,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게 다 차단된 거죠. 무조건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방역을 하는 가운데 그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역과 말할 권리는 충돌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침과 방침들에서는 충돌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규제하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누락되는 권리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확진자를 향한 비난과 혐오도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회사를 못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천 학원 강사<sup>(4)</sup>에 대한 대응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태원 클럽 이후에, 거짓말 학원 강사라는 비난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인천시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고 7차 감염까지 갔으니까 사회적 비난이 정말 거셌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에 걸릴 걸 예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론에서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췄지만, 거짓말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거예요. 확진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확진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포:**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으니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인 위축이 나타났는데요. 인권재단 사람의 경우는 어땠나요? 기부금이나 후원이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박:**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면,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해요.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말이죠. 작년에도 몇 번씩 모금을 하면 모금할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 코로나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들도 더 열심히 모금을 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보탰죠. 특히 대구 지역에 마스크부터 해서 손 세정제까지 어마어마한 지원들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조금 결이 다른 모금을 했어요. 격리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권활동가들이 같이 자가격리를 선택했었는데요. 그들을 위한 모금을 했죠.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하루로 따져보면 몇만 원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지원 대상을 택한 게 인권재단 사람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약 20일간 모금을 진행했는데 2천만 원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었죠.

**박:** 장애인 확진자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 하는 사람도 같이 격리가 되다 보니 바깥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말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 장애인 확진자에게 자가격리 구호물품이라고 왔는데 생쌀이 왔던 게 생각나네요. 혼자서는 취사 자체가 어려운 분이었었는데...현장을 모르니까 생기는 일들 같아요.

**포:**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QR코드<sup>(5)</sup> 인증 같은 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겐 엄청난

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홈리스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돈이 있어도 QR을 찍을 방법이 없어 햄버거를 못 사 먹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포:** 사실 인권 활동은 대부분 대면이 많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론이 만들어졌을까요?

**정:** 저는 오히려 ‘안전한 대면’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권활동가들이 홈리스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역에 가서 아웃리치<sup>(6)</sup>를 하거든요.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잘 지내시나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학으로 이끌고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대부분 휴대폰도 없고 있다 치더라도 홈리스와 줌<sup>(7)</sup>을 통해서 이야기 나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모두가 비대면을 말하는 시대에, 인권 분야만큼은 ‘안전한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 돌봄 같은 분야에서는 정말 그렇겠네요.

**정:** 맞아요. 돌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장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정민, 포민

부모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관계를 통한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데, 거리두기 때문에 도서관도 못 가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들이 제일 먼저 폐쇄되잖아요. 공적인 메시지는 줄곧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면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 대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의 효과가 있죠. 오늘 좌담회도 줌으로 했다면 이런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표정, 말투, 더 질문하고 싶다는 뉘앙스 그런 것들이 대면에서는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서울이 아닌 지역들에서는 비대면으로 더 좋아진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면일 때는 듣기 어려웠던 서울에서 하는 강의를 온라인에서는 들을 수 있고, 수용 인원도 훨씬 많아지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나 회의가 온오프라인이 병행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쌍방향 소통 방식의 공간을



팬데믹: 정, 강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지겠다 싶고요.

**포:** 코로나19를 겪으며 도출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결과들을 아카이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그렇죠. 인권정책 쪽에서는 작년 팬데믹 상황들을 꼼꼼하게 리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뭘 놓쳤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걸 서울시가 나서서 정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이런 상황이 된 지 일 년이 넘었으니 그 기간 동안 나왔던 임시조치, 행정명령의 문제점은 뭔지,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적의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 어쩌면 그게 코로나19가 남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겠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준 거니까요.

**박:** 팬데믹 속에서 오히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게 된 거잖아요.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진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는 감수성이 높아진 거예요. 나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깨우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수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안이라는 게 갑자기 푹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걸 모아 놓고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경북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격리 코호트격리(동일 감염진환의 환자들을 일정 병동에 모아 격리하는 것. 환자를 코호트격리할 경우 의료진의 격리도 동반됨)를 실시했던 대남병원에서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중 7명이 사망했다. (2) 신아원 사건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서울시는 장애계의 투쟁 끝에 거주인 전원을 긴급 분산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아원 거주인들은 방역과 소독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흘만에 신아원에 재입소 했다. (3) 이태원 클럽 감염 사건 2020년 5월 연휴 기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다수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건. (4) 인천 학원 강사 이태원 클럽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역학조사 당시 직업과 동선을 숨겨 7차 감염까지 확산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5) QR코드 Quick Responded of 약자로 컴퓨터가 만든 흑백 격자무늬 패턴 코드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을 취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역학 조사를 위해 시설 방문 시 일회용 QR코드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었다. (6) 아웃리치 Outreach 노숙인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노숙인으로 하여금 근린기관으로 찾아와 기타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법 (7) 줌 ZOOM 재택 근무나 인터넷 강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동시 카메라와 동시 화면을 사용해 그룹 회의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대중적인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사진, 연합뉴스



택배노조 파업



사진, 연합뉴스

무양 무지기운 패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물속구



기억의 집



N번방 피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을 촉구



기억의 집



사진,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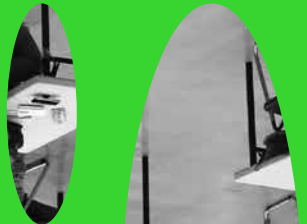


사진, 뉴스스



기억의 집

기억의 집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019 - 2020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POLICY BOOK

5,000원



ISBN 979-11-6161-067-2



---

## 2 Intro 인권정책 기본계획 소개

---

### 8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우수사례

- 12 1-5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16 1-6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19 1-12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

---

### 22 2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우수사례

- 25 2-1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 27 2-5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31 2-6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

### 34 3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우수사례

- 36 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37 3-5 성 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

### 39 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우수사례

- 42 4-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45 4-4 인권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 51 Outro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 POLICY BOOK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제정된 제2차 인권정책.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인권 정책 세부 내용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스토리북의 인권 순간과 연계된 정책을 포함, 총 10개의 우수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차와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1차: 2013~2017, 2차: 2018~2022)

###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 근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성격: 시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 주기: 5개년 중기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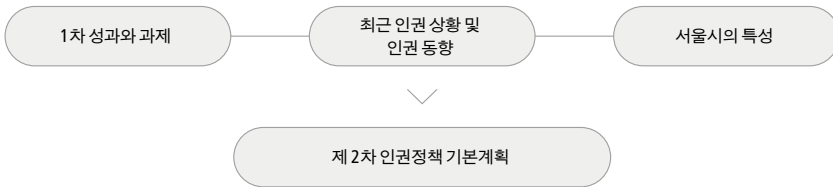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li> </ul>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외의 인권정책 시정 방향을 제시했던 1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 공동체로서의 서울시를 목표로 비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li> <li>• 포용하는 인권도시</li> <li>• 참여하는 인권도시</li> </ul>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보장</li> <li>•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li> <li>•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li> <li>• 시민 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창출</li> <li>• 보편적 국제인권 기준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li> <li>• 포용하는 인권도시</li> <li>• 참여하는 인권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딱딱하고 어려운 말보다, 추상적이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향 설정</li> <li>• 1차와 '참여'의 기초는 같으나, '누리고', '포용한다'는 의미의 기반 구축에서 한발 나아가 인권적 공동체 구성을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li> <li>•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li> <li>• 인권가치 문화 확산</li> <li>• 인권제도 기반 구축</li> <li>•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대상별 접근이 아닌 생활 속에서 누구나 비슷한 인권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함</li> <li>• 도시 공간에 인권적 개념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감</li> <li>• 최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 인권가치 중에서도 차이 존중 문화에 초점</li> <li>• 기 구축된 인권제도 및 시민사회 협력 체계 강화</li> </ul>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7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의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년간 집중 모니터링할 과제를 추진과제 중에서 선정</li> </ul>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의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년간 집중 모니터링할 과제를 추진과제 중에서 선정</li> </ul>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에서 걸로 드러나지 않았던 세부사업 제목을 모니터링이 수월하도록 모두 명시</li> <li>• 실행 가능한 신규 사업을 대거 도입하고, 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 선별</li> </ul>	

-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건설적으로 반영하여 시정 속에 인권 가치를 접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재구축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실효성 제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여전히 취약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사회적 양극화 심화, n포 세대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다문화적인 서울시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치유
- 지난 5년간 변화된 인권담당관의 업무 범위 및 역량을 반영,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인권 시정을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학계, 활동가들과 접점을 넓히며 선도적으로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면모 반영
- '포용도시 구축'이라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선택과 집중,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노동에 대한 강조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디딤돌이 되는 정책 발굴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 ■ 1차의 성과와 과제

##### 【성과】

-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기치로 한 서울시정 최초의 인권행정 실시, 생활밀착형 시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인권행정
-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타 사례와 달리 연구용역,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온 내용을 구체화,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강조, ‘돌봄 노동’ 종사자에 대한 센터 구축 등 지원 제도 마련,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지자체 중 최초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 추진,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및 지속 추진과제 등 발굴

##### 【과제】

-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기본계획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기본계획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제고
-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으로 구성, 개별과제에서 그 전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계량화된 목표를 채우기 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및 사업 추진 필요
-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을 통해 인권적 관점을 제고할 필요

### 최근 인권 동향

자유권 → 사회권, 침해 → 차별, 복지(시혜) → 인권(권리)으로 전환

구분	자유권(1세대)	사회권(2세대)	연대권(3세대)
핵심내용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부터의 자유 강조 (소극적 권리)	• 경제적, 사회적 권리 • ~에 대한 권리 강조 (적극적 권리)	공동체적 유대, 민족적 연대, 집단적 권리 강조
권리 목록	신체의 자유,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참정권 등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등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권리 등
강조점	자유	평등	우애

#### ■ 서울시 특성

##### 【글로벌 인권도시 서울】

- 서울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다문화 갈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동시에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믿음 체계의 영향을 받음
- 세계화의 변화와 지역 특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서울만의 특수한 인권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제까지 국가에만 적용되었던 인권정책을 광역 대도시 서울에서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적용하며 의제를 선도할 수 있음

#####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밀착형 인권 시정】

- 사회적 취약계층과 모든 도시 거주민을 위한 인권정책을 균형있게 선택
- 거대 도시의 면모도 있는 한편, 서울은 천만 시민 한 명 한 명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속성 또한 가지고 있음
-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부모, 비정규직,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성 소수자 관련 인권 이슈를 구체화 함
- 최소한의 생계, 보행, 휴식 공간, 의료, 노동, 주거 등 서울 거주자의 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 【3대 방향】

- 함께 누리다: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시민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실현되는 도시 구현
- 포용하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존중과 배려, 연대와 책임을 함께 하는 인권공동체
- 참여하다: 인권정책 추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인권도시 실현

#### 【4대 정책목표】

-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우리 사회 약자들이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누구나 차별없이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강화
-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서울시 인권정책을 공고히 하고 시민참여로 인권제도를 함께 구축

비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방향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정책목표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li> <li>•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li> <li>•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li> <li>•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li> <li>•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li> <li>• 성평등 문화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li> <li>• 인권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li> </ul>

#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 정책목표

사회 약자들이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보장, 건강, 교육, 안전 등의 생활인권을 확대하기 위함.

###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사업내용】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피해자 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운영,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 【선정이유】

-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폭행죄 신고 시 애정 문제로 치부되는 등 공적 지원 체계가 부족함.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함
- 최근 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의 정도가 기존 범죄 이상으로 심각하여, 여성 스스로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안심 환경 구축이 필요함

###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 한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 대시민 홍보 추진

#### 【선정이유】

-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자녀 돌봄, 보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사회적 편견이 가장 심한 한부모에 대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

### 【사업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가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 【선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모, 종사자, 전문가 등에게 발달장애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질 높은 인적 기반 및 정보 구축·운영 필요
- 현재의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활(可活)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콜 이용요금 인하, 바우처택시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

###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			
1-1	1	아이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신규 가족담당관
	2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신규 보육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			
1-2	1	대안교육기관 연계 지원 강화	신규 청소년담당관
	2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신규 청소년담당관
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			
1-3	1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신규 청소년담당관
	2	위기 청소년 공공의료 강화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1-4	1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연령, 직종, 성별)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2	청소년 노동권리홍보(연령, 직종, 성별)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3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1-5	1	데이트 폭력·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2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3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4	몰카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1-6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신규 가족담당관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신규 가족담당관
	3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미혼모) 생활코디네이터	신규 가족담당관
	4	미혼모(한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신규 가족담당관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계속 어르신복지과
	2	치매지원센터 기능강화로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	신규 건강증진과
	3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지속적 확충	신규 어르신복지과
노인과 돌봄 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조성			
1-8	1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	계속 어르신복지과
	2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계속 어르신복지과
	3	돌봄 노동자 및 어르신 인권교육	신규 어르신복지과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1-9	1	민간쉼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계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지원	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계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			
1-10	1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2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지원			
1-11	1	취업교육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2	서울의료원 연계 치과 진료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3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정 심리상담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			
1-12	1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	발달장애인 가할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4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취약 근로자 보호			
1-13	1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2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3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상생협력 대책 마련			
1-14	1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신규 공정경제과
	2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 진행	신규 공정경제과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신규 공정경제과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1-15	1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2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정착생활 지원			
1-16	1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기관 운영	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5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필요성

- 정부에서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으나, 매년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학내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의 참여율과 실효성 제고
- 최근 10년간 디지털 성범죄 총 11배 증가, 성폭력 범죄의 24% 차지
-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 26만 명 참여
- 타 기관이 제공 중인 위치정보기반 안전 서비스는 SOS 정보를 보호자에 전하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경찰의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함
- 서울시 내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 기대효과

- 대학생 대상 폭력 예방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식개선 및 폭력 민감성 제고
- 예비교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콘텐츠 개발로 아동·청소년 교육현장까지 확산 유도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 연차별 추진 계획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참여 인원 (명)	2,500	400	450	500	550	600
	수정목표				3,500	3,000	3,700	
	실적		189,495	2,927	3,534	183,034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50,000	40,000	50,000	50,000	50,000	60,000
	확보예산		190,000	40,000	50,000	50,000	50,000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수 (건)	800	850	900	950	1,000	
	수정목표				500	1,500	450	
	실적		858	1,674	1,460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950,000	80,000	285,000	490,000	495,000	600,000
	확보예산		2,020,000	80,000	1,080,000	430,000	430,000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구축 및 운영 자치구 (개)	25	25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수정목표							
	실적		25	25	25	25	25	25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6,859,000	1,140,000	1,219,000	1,500,000	1,500,000	1,500,000
	확보예산		5,506,093	1,140,000	1,219,000	1,686,000	1,461,093	

-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인원	125,000	60,000	65,000		
	수정목표		인원			82	
	실적		68,280	95,486	79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4,258,000	1,000,000	1,500,000	1,758,000	
	확보예산		4,128,858	815,000	1,578,000	1,735,858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 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 성평등 토크콘서트 개최 및 성평등 캠퍼스 MOU 체결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1 DOO 캠페인' 서약 운영
- 고위험군 청소년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데이트 폭력 상담전용콜 운영,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공모 운영
- 초·중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단 및 캠페인 운영
-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예방 사업
-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운영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사업내용】

-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우리 시 정보인프라(CCTV, 통합관제센터 등)를 활용해 24시간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모델

【주요 서비스】

- 긴급상황신고 서비스 : 위급상황 위치정보기반 지도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현장 대응, 112신고 등으로 위기극복
- 안심귀가 서비스 : 위험이 예상 또는 감지되는 구간으로 이동 시 안전 귀가 관제 서비스를 제공
- 스카우트 서비스 : 심야에 서울시 안심스카우트 대원과 동행, 안전한 귀가를 위한 만남 지원

■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사업내용】

- 운영인원: 79명(자치구별 2~6명)
- 근로조건(4대보험 가입)
  - 시급 10,530원(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출장비 별도 지급)
  - 주 3회 근무(1일 6시간 10:00~17:00), 근무시간 탄력 운영 가능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주요업무
  - 자치구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실시
  - 예방적 감시활동 및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1-6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 필요성

- 현재 자녀 돌봄, 보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정책에서는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 주거안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비혼모·부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이 가장 심한 미혼모에 대한 종합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을 홍보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

### ■ 연차별 추진 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비고: 실 인원(월 평균))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수 (명)	143,120	25,902	27,197	28,556	29,983	31,482
	수정목표		118,099	25,902	27,197	25,000	20,000	20,000
	실적		49,832	12,448	19,147	18,237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14,764,702	26,630,000	44,969,136	46,318,821	47,707,756	49,138,989
	확보예산		169,420,136	26,262,000	44,969,136	46,535,000	51,654,000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수 (명)	71,200	14,000	14,000	14,200	14,400	14,600
	수정목표				9,661	14,000		
	실적		122,474	33,089	55,233	34,152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92,095	38,419	38,419	38,419	38,419	38,419
	확보예산		209,458	38,419	38,419	39,920	92,700	

-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수 (건)	3,100	500	500	600	700	800
	수정목표				1,125	500		
	실적		3,995	1,482	1,150	1,363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22,419	40,000	38,419	44,000	48,000	52,000
	확보예산		142,759	30,020	38,419	36,120	38,200	

- 한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홍보 건수 (건)	620	100	100	120	140	160
	수정목표							
	실적		978	567	316	95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1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확보예산		112,990	30,000	20,000	28,270	34,720	

### ■ 주요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 비혼모·부자 초기 지원기관 운영지원(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1-12

##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 부자가족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자립지원
- 한부모(미혼모·부포함)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길라잡이」 e-book 제작 및 배포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한부모가족의 돌봄인프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및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통합적 정보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해 미혼모(한부모)의 자립지원

### 【미혼모(한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공무원 대상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2회) 및 찾아가는 교육(수시) 실시
- 미혼모(한부모) 서비스지원에 대한 주민센터 비치용 안내지 제작·배포

### ■ 필요성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교육 또는 연수 과정이 없어,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움
- 재활(Rehabilitation)을 넘어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서비스 운영 체계 필요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 필요

### ■ 기대효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극적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촉진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음

### ■ 연차별 추진 계획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780	1,000	1,100	1,200	1,300
	수정목표	건수 (건)					
	실적		2,715	901	1,047	767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5,706,000	841,000	1,115,000	1,200,000	1,250,000
	확보예산		4,259,910	841,000	1,082,000	1,112,642	1,224,268

-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수정목표	참여 인원 (명)	플랫폼구축				
	실적		플랫폼구축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확보예산		1,915,000	400,000	609,000	609,000	148,500

• 발달장애인가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비교: 누계 여부)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사전절차 부지매입	설계 및 신축	타당성용역	기능강화
	수정목표		타당성용역	타당성용역	용역결과 분석 등	타당성 검토 및 설계 등	신축
	실적			용역결과	사회보장 재협의 요청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7,600,000	100,000	4,500,000	9,000,000	2,000,000
	확보예산		9,100,000	100,000			9,000,000

• 시각장애인가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콜 처리율 (%)	85%	86%	87%	88%	89%
	수정목표		80%	81%	82%	83%	84%
	실적		55%	66%	75%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20,802,306	13,400,000	18,402,306	24,000,000	30,000,000
	확보예산		68,222,396	13,400,000	18,402,306	17,980,873	18,439,21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및 응급 보호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 발달장애인가활 전 생애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개발 지원
-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지식·정보·기술 공유 플랫폼 유지 보수 및 고도화
- 발달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지리드(easy read) 버전의 웹사이트 추가 개발·제작
- 발달장애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인가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사회보장 재협의(~2021. 6)
-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조성 재검토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대지 1,580㎡, 연면적 3,129.74㎡)
  - 주요시설 : 발달장애인가활지원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실천모델 개발·지원 : 교육, 멀티놀이공간, 도전적 행동지원

■ 시각장애인가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 서비스 제공

# 2 |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정책목표

누구나 차별없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 도시공간에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며,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려 함

### ■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 【사업내용】

-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운영 지속
- 주거복지센터 운영기반 강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선정이유】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생활이 불안정.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 실시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지역사회 정착

###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탈시설 정보 제공
-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 【선정이유】

- 민·관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정책 혼란 최소화 및 탈시설 협치 도모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정보 제공 필요
- 이용 장애인의 자립지원 역량강화 필요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자립준비를 도모하기 위함
-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의 변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을 도모

##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유모차 / 장애인 / 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선정이유】

-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 세부과제 목록

2.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2-1	1	주택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신규	주택정책과
	2	주거복지센터 1차지구 1센터 설치	신규	주택정책과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2-2	1	임대차 관련 원스탑 서비스 제공	신규	주택정책과
	2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신규	주택정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				
2-3	1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2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	공정경제과
	3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신규	인권담당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2-4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신규	임대주택과
	2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한 입주지원 대책 수립	신규	임대주택과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2-5	1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	탈시설 정보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2-6	1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신규 버스정책과
	2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신규 관광정책과
	3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취약계층 관광콘텐츠 개발	신규 관광정책과
	4	유아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신규 도시공간개선반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2-7	1	재난약자를 위한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신규 상황대응과
	2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신규 상황대응과
	3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신규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환경오염을 고려한 시민환경권 증진사업			
2-8	1	시민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줄이기	신규 대기정책과
	2	도시가로수 확충 및 녹지조성 확대	신규 조경과

# 2-1

##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주택정책과)

### ■ 필요성

-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 보조 필요
-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1센터 1자치구 책임 관할 체계 필요

### ■ 기대효과

-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및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강화

### ■ 연차별 추진 계획

-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운영 지속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52,000	12,000	10,000	10,000	10,000
	수정목표	가구 (수)	20,000	6,000	4,000	4,000	3,000
	실적		15,813	6,975	4,776	4,062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9,700,000	7,600,000	7,000,000	6,500,000	4,300,000
	확보예산		26,250,000	7,600,000	7,650,000	5,000,000	6,000,000

- 주거복지센터 운영 기반 강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수)	26	26	26	26	26
	수정목표						
	실적		26	26	26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23,770,494	2,995,000	4,002,500	4,765,771	5,717,725
	확보예산		17,079,370	2,995,000	4,002,500	4,765,771	5,316,099

■ 주요 내용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운영 지속】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택 및 고시원 거주 민간 월세 임차가구
- 지원금액: 최소 80,000원~최대 105,0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기반 강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지역 주거복지센터: 1자치구 1지역센터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직접 지원, 민간자원 연계)
  - 주거복지 홍보·교육,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별 특화사업
- 중앙 주거복지센터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업무 표준화 및 활성화사업, 지역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간 자원 배분 및 연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광역적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

2-5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필요성

-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 인권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준용 필요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 당사자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 기대효과

- 지역거주 지원기반 강화, 시설구조적 한계극복을 통해 시설장애인 인권증진 도모
- 정부 및 타 지자체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등 장애인 탈시설 선도

■ 연차별 추진 계획

-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운영 횟수 (회)	10	2	2	2	2
	수정목표		8	1	1	2	2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30,000	6,000	6,000	6,000	6,000
	확보예산		5,350	750	1,500	700	2,400

- 탈시설 정보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173	18	26	43	43
	수정목표	개소 (수)				41	41
	실적		97	18	43	36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88,000	9,000	13,000	22,000	22,000
	확보예산		38,000	9,000	13,000	11,000	5,000

•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수)	215	43	43	43	43
	수정목표					41	41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수)	2	계획준비	1	계획보완	1
	수정목표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00
	확보예산						

■ 주요 내용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역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조정,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운영내용 - 서울시 탈시설화 세부사업 추진 관련 현안 및 후속 조치 협의, 탈시설 시민 인식개선, 이해당사자간 탈시설 정책 공감대 형성 노력 등
- 운영기간 - 2018. 3~2022. 12(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주기 - 반기 1회 이상

【탈시설 정보 제공】

-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교육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교육내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 방법 - 장애 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자립지원 계획 의무 수립(연 1회)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으로 준비된 절차에 의해 지원  
: 퇴소 전(자립체험 지원, 지역사회 필요자원 사전 확인 등),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등 추진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탈시설 계획 이행 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 종사자 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사업 주체별 역할
  - 거주시설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이행평가
  - 자치구·시  
: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확인 및 행정 지원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 대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시설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운영)
- 내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변환 지원체제로 직무 재배치, 시설 변환 매뉴얼 제작 등

# 2-6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 필요성

- 도시공간에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없이 시설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적 디자인 설계 작업이 필요함

### ■ 기대효과

- 장애인,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 약자가 이동과 관광에 불편함이 없는,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도시공간 마련

### ■ 연차별 추진 계획

-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추진 목표	기본 계획	522	22	50	100	150	200	승차대 확대설치 방침	
	수정 목표	개소(수)	401	22	70	61	48		200
	실적	244	22	120	102				
소요 예산	기본 계획	25,880,000	880,000	2,5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확보 예산	천 원	8,100,000	880,000	3,150,000	2,390,000	1,680,000		

-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추진 목표	기본 계획	접근성 개선(개)	1,300	40	50	300	400	510	특장 버스 도입은 2023년까지 총 10대 목표
		관광시설 인증제(개)	1,200		300	300	300	300	
		특장버스 도입(대)	4		1	1	1	1	
	수정 목표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포털 운영 및 추가개발	포털 운영	포털 운영	포털 운영	
		접근성 개선(수)		40	50	50	50	100	
		특장버스 도입(대)		1	3	3	0	3	
실적	접근성 개선(수)			53	60				
	관광시설 인증제(수)			310	310				
	특장버스 도입(대)			4	7				
소요 예산	기본 계획		1,410,000	2,066,000	2,845,000	4,295,000	4,295,000		
	확보 예산	천 원	1,410,000	2,136,000	2,845,000	2,221,967			

###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추진 목표	기본 계획	무장애 콘텐츠 개발(개)	250	30	40	50	60	70
		여행활동 지원(명)	7,000	1,000	1,200	1,400	1,600	1,800
	수정 목표	무장애 콘텐츠 개발(개)						
		여행활동 지원(명)				800		
	실적	무장애 콘텐츠 개발(개)	156	30	40	86		
		여행활동 지원(명)	2,494	1,113	1,381			
소요 예산	기본 계획	무장애 콘텐츠 개발(천 원)	470,000	7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여행활동 지원(천 원)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확보 예산	무장애 콘텐츠 개발(천 원)	499,000	70,000	139,000	145,000	145,000	
		여행활동 지원(천 원)	1,350,000	300,000	300,000	500,000	250,000	



- 유아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120	24	24	24	24	24
	수정목표 (회)						
	실적	70	23	22	25		
소요 예산	기본계획	569,480	113,896	113,896	113,896	113,896	113,896
	확보예산 천 원	386,372	113,896	80,238	96,238	96,000	

■ 주요 내용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 사업기간: 2015. 1~2020. 12
-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의 가로변 버스정류소(사업대상지 자치구 협의 결정)
- 사업규모: 6년간 총 338개소 설치
- 사업내용: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 저상버스의 정류소 정위치 정차 및 근접 정차 유도를 위한 휠체어 대기공간, 점자블록 설치, 승하차 지장물 제거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관광약자의 여행수요가 많은 지역 내 음식점·숙박업소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휠체어 탑승 가능 특장버스 운영을 통한 관광약자의 다양한 여행활동 지원
- 서울 명소 순환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지원 및 관광약자 소속기관에 대여 서비스 제공
- 서울다누림관광 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danurim.net) 구축·운영
- 특장버스 예약 서비스 및 맞춤형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무장애 여행지 발굴·선정을 통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충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서울시 거주 관광취약계층 선정 및 여행상품 지원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추진목적: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
- 추진일정: 월 2회 정기 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W물 등의 공공공간과 더불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를 통하여 서울 도시경관 향상

# 3 |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 정책목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정책. 서울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연대하며 개인적, 집단적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도시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사업내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선정이유】

-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인권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 ■ 성 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 【사업내용】

- 성 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선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인권인식조사' 결과 성 소수자가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전과자와 함께 인권 존중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로 평가됨
- 국제적으로 성 소수자의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인정, 적극적 인권증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정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필요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

## ■ 세부과제 목록

3.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성평등 문화 확산			
3-1	1	민관정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성평등교육 추진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2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3-2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인권담당관
	2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계속 인권담당관
인권자료 및 인권도시 공간 발굴			
3-3	1	인권관련자료 개발 및 수집 제공	계속 서울도서관
	2	인권도시공간 발굴	계속 인권담당관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3-4	1	문화통합권 이용	계속 문화예술과
	2	공공도서관 확충	계속 서울도서관
	3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3-5	1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계속 인권담당관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신규 인권담당관

# 3-2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인권담당관)

### 필요성

- 서울은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공존하는 도시임
- 이와 같은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는 한편으로 도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쟁력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점이 강조됨
- 서울 역시 다양성 증가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서울시 거주민과 시 행정에 다양성의 가치 확산
- 다양한 도시 거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 조성

### 연차별 추진 계획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5	1	1	1	1	1
	수정목표						
	실적	4	1	1	2		
소요 예산	기본계획	205,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확보예산	359,800	79,000	89,000	129,000	62,800	

### 주요 내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 소수자 영역별 공무원 가이드라인 수립은 불필요한 업무 중첩 예방을 위해 각 사회적 소수자 담당부서에서 필요 시 제작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인권정책,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 정확한 인권정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소책자·동영상 등 제작·배포
- 사회적 소수자 관련 전시·강연 등 문화행사 기획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 3-5

## 성 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인권담당관)

### 필요성

-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과제를 이어 진행
- 여러 조사에서 성 소수자 인권이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필요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성 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그들의 인권실태를 개선
- 시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개선

### 연차별 추진 계획

- 성 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인권증진 정책	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수정목표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가이드라인 발표	정책 추진
	실적				가이드라인 개발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70,000	10,000	15,000	20,000	25,000
	확보예산		21,200	5,000	16,200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운영 (회)	50	10	10	10	10
	수정목표	이수자 (명)			2,000	2,500	3,000
	실적	회/명	2,445	12	37	2,396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인권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연계 추진				
	확보예산						

### ■ 주요 내용

#### 【성 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 성 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연구, 자문 등을 통해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부서 연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체계를 통해 수립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관련 인권 현안 회의 개최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에 성 소수자 관련 내용 포함
  - 관련 법령, 제도 소개, 성 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 교육: 온라인교육 실시
  - 1개 과정(차별예방 교육) 운영

## 4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 정책목표

서울시 인권정책을 공고히 하고 시민참여로 인권제도를 함께 구축하려는 정책. 서울시 인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제도를 함께 만들 권리를 확장하며, 도시들 간 인권네트워크 조성,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인권센터 설치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선택이유】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 분야 전문성을 시정 내 적극 도입
-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의 실효성 강화
- 인권정책의 평가 제도이자 시민의 행정참여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 인권 존중적 시각에서 정책입안 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 ■ 인권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확대

##### 【사업내용】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 【선택이유】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시민 인권증진과 직결된 인권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필요성 대두

-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사건 혹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범위 외 사건 가운데 특히 시민에게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선택,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자발적 진행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결, 시 인권침해구제 과정에 다양한 층위의 시민참여 보장

■ 세부과제 목록

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b>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b>			
4-1	1	인권센터 설치	신규 인권담당관
	2	인권연향평가 실시	신규 인권담당관
	3	인권아카데미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b>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b>			
4-2	1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계속 인권담당관
	2	인권실태조사 추진	계속 인권담당관
<b>인권도시 연대 강화</b>			
4-3	1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계속 인권담당관
	2	광역지자체인권도시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계속 인권담당관
	3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신규 인권담당관
	4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신규 인권담당관
<b>인권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확대</b>			
4-4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규 인권담당관
	3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신규 인권담당관
	5	시민인권보호관 대신인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신규 인권담당관
<b>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치 거버넌스</b>			
4-5	1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속 외국인문화담당관
	2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신규 자치행정과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4-6	1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	신규 가족담당관
	2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신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b>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b>			
4-7	1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계속 정보공개정책과
	2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신규 데이터센터
	3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계속 정보통신보안담당관
<b>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교육 강화</b>			
4-8	1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개설	신규 서울시립대
	2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신규 서울시립대

# 4-1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인권담당관)

### ■ 필요성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민간 분야 전문성 도입 및 시민사회 협치 필요성 증가
- 인권정책의 평가 제도이자 시민의 행정참여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요구 증가

### ■ 기대효과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 인권 향상 및 서울시 인권행정 실효성 증가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시정 내 인권 주류화 실현 및 시민참여 확대
-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 시민의 권리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권의식을 함양, 이로써 인권행정 구현에 기여

### ■ 연차별 추진 계획

- 인권영향평가 실시

(비고: (2018년도 시범평가 추가: 조례 3건(기존)+건축물 1건(추가))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11	1	2	2	3	3
	수정목표	건	2				
	실적	6	2	2	2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85,000	25,000	40,000	40,000	40,000
	확보예산		187,000		50,000	70,000	67,000

- 인권 아카데미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1,000회	200회	200회	200회	200회	200회
	수정목표	회/%			60%	65%	70%
	실적	440회	218회	222회	87%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156,250	231,250	231,250	231,250	231,250
	확보예산		882,490	231,250	221,200	215,020	215,020

### ■ 주요 내용

#### 【인권센터 설치】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인권센터)

#### 제11조(인권센터)

-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 인권 관련 실태조사
  -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전문성 있는 민간 주체에게 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위탁기간: 3년)
- 모집대상: 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위탁 대상 업무: 재검토 후 결정

(예시) 인권교육, 인권단체 지원·협력, 인권정책 조사·연구, 인권관련 아카이브 구축, 인권기초상담 업무 등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인권정책의 평가 제도이자 시민의 행정참여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 사업내용
  - 자치법규, 건축 시설물, 정책 사업 분야를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내부에 인권감수성 제고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 i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ii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인권 개념, 서울시 인권정책 및 제도 소개
  -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운영(권리별, 소수자별, 강의형, 참여형 등)
- 추진현황: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대규모 축소 및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 4-4

## 인권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인권담당관)

- 필요성
  - 서울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인권침해 사건 관련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견고하게 시민 인권 보장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
-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시민배심원제 등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청취,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한정되어 있던 안전 범위를 범사회적 인권문제로 확대하여 시민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연차별 추진 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전체	40	8	8	8	8
	수정목표	회의 개최					
	실적	(수)	22	8	7	7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430,000	86,000	86,000	86,000	86,000
	확보예산		299,300	85,500	85,500	68,200	60,100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	40	8	8	8	8
	수정목표					70%	
	실적		22	11	11	12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 원	1,105,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확보예산		784,200	221,400	206,400	206,400	150,000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15	3	3	3	3	3
	수정목표			2	4	3	
	실적	8	3	2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32,000	6,000	6,000	6,000	7,000	7,000
	확보예산	23,040	5,760	5,760	5,760	5,760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본계획	건	65	13	13	13	13	13
추진 목표	수정목표	개최건수 /점검건수	60/273	12/65	12/40	12/68	12/50
	실적	개최건수 /점검건수	51/173	15/65	19/40	17/68	
소요 예산	기본계획	186,600	35,200	34,800	37,800	37,800	41,000
	확보예산	149,600	35,200	34,800	37,800	37,800	

•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상담 활성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29	5	5	6	6	7
	수정목표	운영 횟수 (회)					
	실적	14	5	6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확보예산	4,000	1,000	1,000	1,000	1,000	

■ 주요 내용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제14조~제17조)
- 역할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심의·자문
- 인권위원회 구성
  - 인원: 총 15명 이내(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 분야별 전문가: 인권 일반, 법률, 청년, 노인, 성평등, 장애,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건강·환경권 등
  -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 등
- 인권위원회 기능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
  -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및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 활동내역
  - 정기회(연 4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소위원회
  - 인권포럼, 워크숍, 광역지자체와 협력활동 등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인권 사업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 사업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대상 집행지침 교육, 회계 관련 상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 구성
  - 200명(시민 150명, 전문가 50명)
- 안건 선정
  -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중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안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모의 주제 가능)
- 회의운영
  - 배심원 16명 선정(주재자 1, 시민 10, 전문가 5)
- 회의개회
  - 배심원 2/3이상 참석으로 개회
- 배심평결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재적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평결효력
  - 배심원 평결은 구제위원회 결정을 기속하지 않지만 최대한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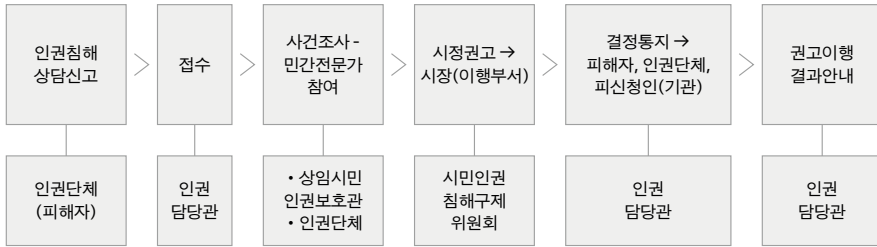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구성
  - 10명(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7명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 직무
  - 신고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결정
  - 조사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수행, 인권침해여부 결정은 구제위원회 의결
- 위원회 개최
  - 정례회(월 1회) 및 임시회
- 사업내용
  - 인권침해 사안 권리 구제 및 보호 강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시정권고 이행력 제고: 시정권고 이행점검 및 시장 보고
  - 상담 및 접수, 조사 지원, 2차 피해 예방 활동 등

##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및 인권교육, 현장상담 등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의 대시민 현장활동력 강화
  - 서울시 공사·공단(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0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협업, 지하철 역사 및 공원 등 다양한 현장 공간을 찾아가 다양한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설치 및 운영
  -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된 사건 중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가능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으로 인권단체와 협력체계 확보

- 핫라인 운영절차



- 인권부서는 피해자와 신청인(인권단체)을 달리하여 사건 접수
- 필요시,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조사 참여 및 피해자 구제조치 협의
- 권고통지 외 이행 결과를 인권단체에 추가 안내
-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 2020. 5~10
  - 코로나19 이태원 감염 확산의 비상한 시점에 강제 커밍아웃 등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 기존 핫라인 방식을 원용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20. 10. 5.] [조례 제7763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02-2133-638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의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9. 12. 31.>
-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현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2020. 10. 5.>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의2.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15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 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29.>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9.>
-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2016.9.29>**

**제18조(설치 및 구성)**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9.>
-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9.>
-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 9. 29., 2019. 12. 3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9. 29.>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설 2016. 9. 29.>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16. 9. 29.】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 2016. 9. 29.>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16. 9. 29.>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3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8.>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 9. 29.】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9.】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 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29.】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9. 29.】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6. 9. 29.>】

**부칙 <제7763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